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지연 의원 외 6명

2. 제안이유

공동주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운영교육을 명시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확대(안 제24조)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운영교육 신설(안 제47조~제4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기 타 : 조례안 예고(2021. 6. 28. ~ 7. 5.)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를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 시설, 건축설비 분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운영 교육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공동주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확대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